제정 2019년 9월 30일 규칙 제859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) ① 「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3조(신청서의 보완)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 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- **제4조(신청의 취하)**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- 제5조(고층민원의 예외적 조사대상)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"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  - 2. 신청인이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사실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

과한 후 인지한 때

- 3.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되는 사실이 신청 시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
- 4.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.
- 제6조(반복·단순 고충민원의 처리)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  -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이 처리하게 할수 있다.
- 제7조(조사의 방법)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직원, 신청인,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조사 또는 방문 취지·내용·일시·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.
  -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진술 청취 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- 제8조(합의)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.
  - 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9조(권고 및 의견표명) 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 - 1. 고충민원의 내용
  - 2.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
  - 3.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대로 조

- 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.
- 제10조(고충민원 결정 통지) 옴부즈만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.
- 제11조(처리결과 통보)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조치통지서에 따른다.
- 제12조(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)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되는 소속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관계 서류의 제출
  - 2.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
  - 3.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·진술
  - 4. 그 밖에 확인·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.
- 제13조(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) 옴부즈만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고,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  - 1.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
  - 2. 옴부즈만의 시정·감사요구·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
  - 3.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(미처리 사유 포함)
  - 4.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4조(공인의 사용) ① 옴부즈만이 발송·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「오산시 공인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15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오

산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[별지 제1호서식]

l 기수미워 시정서 ├──					처리기간 60일	
접 수	번 호	제	্ই	접수 연월일		
신청인	성명			생 년 월 일		
	주소			성별	남	/ 여
				전 화 번 호 (휴 대 전 화	.)	
대표자	성명			생 년 월 일		
	주소			성별		/ 여
(대리인)				전 화 번 호 (휴 대 전 화	.)	
	신청인과의 관계					
민원제목						
민 원 내 용		'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, 원인이 된 사실내용'				
기타참고사항 ·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: ·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:		:				
			년	월 일		
	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는 날인)	
	•	로 신청하였을	•			
이 신청서는 신청인(대리인) 가(이) 오산시 옴부즈만						
에게	에게 ( )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.					
	작성자(직급) 성명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			날인)			
오산시 옴부즈만 귀중						
<ul><li>※ 유의사항 ① 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</li><li>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.</li></ul>						

210mm×297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	고충민원 접수처리부								
연	접수				처 리				
번	접수일	신청인	주 소 (연락처)	민원제목	담당 부서	처리일 (의결일)	처 리 내 용	신청인 통 보	비고

297mm×210mm 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3호서식]

1. 모형 및 규격(가로 60mm × 세로 90mm)

### (앞쪽)

# 신분증명서

사 진

 $3cm \times 4cm$ 

(탈모,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촬영한 것

홍 길 동 Hong Gil-dong

오산시옴부즈만

### (뒷쪽)

발 급 번 호 : 발급년도- 0

유 효 기 간: 0000.00.00.~0000.00.00.

직 책 : 오산시 옴부즈만

성 명: 홍길동

생 년 월 일: 0000.00.00

위 사람은 「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4 조에 따라 옴부즈만임을 증명함.

xxxx년 xx월 xx일

오 산 시 장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

2. 색 깔: 연한 노란색

3. 글씨체: 신명조체

4. 표 면: 투명한 P.V.C로 포장한다.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	고충민원조사결과 통지서
접수번호	
신 청 인	
민원제목	
민원내용	
조사결과	
조치내용	

「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 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> 년 월 일 **오산시 옴부즈만 (인)**

# [별지 제5호서식]

	고충민원조사결과 조치통지서
접수번호	
신 청 인	
민원제목	
민원내용	
권고 취지	
통보 내용	
「오산시 옴	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
규칙 제12조어	비따라 년 월 일자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
대하여 시로부	부터 다음과 같이 조치(검토) 결과가 통보되어 이를 알려드립니
다.	

- 9 -

오산시 옴부즈만 (인)

년 월 일